

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

(제89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내용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1	대행취소
2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2	대행취소
3.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3	대행취소
4.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4	업무정지 6개월
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5	업무정지 3개월
6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	영 호 제14조제1항제6	업무정지 2개월